정상의 자신감! 마포의 자부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507번지 일대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급규모 및 내역

아파트 B5~27F, 18개동, 총 1,694세대 중 일반분양 3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가 및 분양조건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일정

구 분	신청 접수일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18.03.29(목) 예정	• 마포프레스티지자이 홈페이지 (http://www.m-xi.co.kr)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접수	2018.04.03(화) 예정 10:00 ~ 14:00	• 견본주택 방문 접수 – 신청 장소 :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견본주택,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170 (대흥동 3-57) ※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특별공급 신청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2018.04.03(화) 17:00 이후 예정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또는 당사 홈페이지 게재 (www.xi.co.kr)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세대수

구분	59A	59B	59C	59D	59F	59G	84A	84B	84C	84D	84E	TOTAL
우수선수	–	–	–	–	1	–	–	–	1	–	1	3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도

정상의 마포의
자신감! 자부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2018.03

분양문의 02)2135-1694

총 1,694세대 중 일반분양 396세대
전용 59㎡/84㎡/114㎡

정상의 자신감! 마포의 자부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기간,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 등)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 / 서울시(특별시 및 부산시) / 인천시(그 밖의 광역시) / 경기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 85㎡ 이하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전용 102㎡ 이하 /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전용 135㎡ 이하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모든 면적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청약바람.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 그 외 지역 전용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 당첨일로부터 3년 전용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당첨일로부터 1년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 (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우수선수,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대상자)에 해당 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추천기관 :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정상의 자신감! 마포의 자부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 · 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비고
동호수 결정방법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과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될 수 있음.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신청서,서약서	O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감증명서	O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O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신분증	O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O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O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가족관계증명서		O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O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O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대리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O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위임장	O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도장	O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